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339 | 2026.7.6 (2026.6.29 ~ 2026.7.5)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한민국 제조업 대전환의 길 : 제조 AI 2030 전략」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전략은 지난 2월 발표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에 따라 산업통상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제조TF 소속 민간 전문가 23명과 함께 약 6개월간 논의를 거쳐 도출한 결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신뢰 기반의 인공지능(AI) 혁신을 촉진하는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7-2029)」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개인정보위가 법에 따라 3년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함께 수립하는 계획으로, 인공지능 대전환에 따른 데이터 활용 수요 증대와 반복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당면환경에 대응하여 향후 3년간 추진할 개인정보 정책의 청사진을 마련한 것입니다.

【입법(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조례를 통해 주차기준을 20~50%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던 것을 강화 기준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고, 완화할 수 있는 주차대수 확보 의무를 50~70%까지 확대하는 등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 가능한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6층까지 건축 가능하도록 하려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건의료·통신·에너지 분야에서만 우선 시행 중이던 제3자전송을 고용·교육 분야까지 확대하고, 본인전송 범위 및 전송자의 의무를 조정하는 등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법원이 전문성을 갖춘 제3자를 지정하여 현장 출입, 자료 열람·복사 등 필요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게 하고, 조사 범위와 절차에 대한 법원의 통제를 강화하는 등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0인)」,

국외에서 이루어진 건설위탁에 대하여도 이 법을 명시적으로 적용하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계열 외국법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도록 하며, 국제중재를 전속적 관할로 하는 특약을 부당특약으로 규정하는 등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1인)」,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 우선배정 비율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유하는 주식수 기준도 신규 발행 주식과 이미 발행된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으로 조정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1인)**」 ,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 수령 및 가맹계약 체결을 제한하며,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산정서 등 예상수익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산출근거 및 매출변동 요인을 설명하도록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3인)**」 ,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의 임직원이 성과조건부주식을 양도받는 경우 그 성과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이준석의원·황정아의원 등 11인)**」 ,

소요결정 이전에 방위산업체 및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등의 상시 신청을 받아 신청자가 제안한 성능 등에 대한 시험평가를 우선 진행하고, 각 군의 소요가 발생하는 즉시 전력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3의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을 신설하기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2인)**」 ,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정보의 게재자에 대하여 광고 수익화 제한 등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규정을 두는 등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 ,

국외 가입자식별모듈을 판매하는 자에게 해당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및 송수신되는 데이터가 경유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운용하는 자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그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 ,

국가 재원의 공정한 배분 책무를 명시하고 기본계획의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미래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고용 유지 및 전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등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0인)**」 ,

국가 차원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디지털 헬스케어 운영체계와 기반을 조성함과 동시에,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권철승의원 등 10인)**」 ,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미래 성장 핵심 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후테크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박정의의원 등 36인)**」 ,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열거주의 방식에서 노무제공계약의 실질에 기초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을 위한 임대주택을 산정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전체 건축물 연면적 또는 세대수에서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하여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제외하도록 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정무위>, <재경위>, <과방위>, <국방위> 등에서 전체회의가 개최되어 간사를 선임하고 업무보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대한민국 제조업 대전환의 길 : 제조AI 2030전략」 주요 내용 공개(관계부처 합동) 8
- 「신뢰 기반의 인공지능 혁신을 촉진하는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7~'29)」
발표(개인정보보호위원회) 9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12
-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방부) 12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소벤처기업부) 13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소벤처기업부) 13
-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산업통상부) 1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고용노동부) 14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금융위원회) 14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중소벤처기업부) 16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보건복지부) 16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6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7
-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7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개인정보보호위원회) 17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0인) 20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1인) 20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2인) 21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의원 등 10인) 2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1인) 22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의원 등 13인) 22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의원 등 15인) 22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23인) 2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3인)	23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0인)	2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이준석의원·황정아의원 등 11인)	24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2인)	2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희의원 등 10인)	2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	26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	2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0인)	27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7인)	27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5인)	27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2인)	28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2인)	28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0인)	29
•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29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30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1인)	30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2인)	31
• 기후테크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박정의원 등 36인)	31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21인)	3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32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9인)	33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2인)	33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34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38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바로가기](#)

- [공정거래]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방송통신(TMT)]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출범
- [노동] 월간 노동 뉴스레터
- [건설/부동산] 월간 건설부동산 뉴스레터
- [건설/부동산] 세종 건설클레임센터 Monthly Insight 6월호
- [금융] 일정실업 사례로 본 시가총액 미달 상장폐지 절차와 상장사의 선제적 대응 방안
- [조세] 이혼 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나눌 것인가? - 현물분할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 실무상 시사점
- [노동] ILO, ‘플랫폼 경제에서의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 채택

- [공정거래] ‘소비자 3법’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 반복 위반 제재 강화 및 임의적 감경 축소
- [건설/부동산] 책임준공 관리형토지신탁 사업에서 보증기관의 항변을 모두 배척하고 계약이행보증금 전액 지급을 인정받은 사례
- [조세] 세종 미래상속 Insight 2호
- [에너지·자원] 해외 투자개발사업 Issue Brief - ‘ADB 재원투입 해외 인프라 사업’에 대한 조달 제도 동향 : MPC 도입
- [금융]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6. 6. 17. - 2026. 6. 30.)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대한민국 제조업 대전환의 길 : 제조AI 2030전략」 주요 내용 공개 - 2030년까지 민관 합동 20조원 투자, 경제적 부가가치 100조원 이상 창출 - 3대 핵심과제 : ①국가 차원의 핵심 제조데이터 관리·활용 체계 구축, ②제조업에 특화된 AI두뇌 개발, ③지역 제조AI 확산	2026-06-29
---------	--	------------

정부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 계기에, 제조업 대전환의 막을 여는 「대한민국 제조업 대전환의 길 : 제조 AI 2030 전략」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음. 이번 전략은 지난 2월 발표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에 따라 산업통상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제조TF 소속 민간 전문가 23명과 함께 약 6개월간 논의를 거쳐 도출한 결과임

[핵심 과제]

제조AI 관계부처 간의 짜임새 있는 협업을 통해 ①국가 차원의 핵심 제조데이터 관리·활용 체계 구축, ②제조업에 특화된 AI두뇌(AI모델) 개발, ③지역 제조AI 확산 등 3가지 핵심과제를 신속 추진

① 제조AI 품질을 좌우할 제조데이터는 국가 직접 챙기기 위해 철통 보안·관리 시스템을 갖춘 “국가 제조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축. 부처별로 보유·관리하고 있는 제조데이터를 연계하고, 이 데이터들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으면서 기업 간 데이터 공유·이전 시 특정 기업의 자산(데이터)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국가 주도로 활용·관리하는 제조데이터 도서관 설립

② 이렇게 구축한 제조데이터와 독자 AI파운데이션 모델 등을 통해 축적한 기술역량을 활용하여 제조업 전반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제조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 또한, 물리법칙 기반 AI 모델, 제조공정 내 이종 장비·로봇간 연계, 물류·공급망 최적화 등 제조피지컬AI 원천·기반 기술 등을 바탕으로, AI와 로봇이 협업해 자율 운영되는 지능형 공장인 “폴스택 AI팩토리”를 수출 가능한 상품으로 키워나가겠다는 계획

③ 고도화된 제조AI는 제조기업들이 집적해있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지역 거점대학 등에 빠르게 확산하여 안전사고가 잦은 위험 공정을 AI로 대체하는 등 기업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 이를 위해 국내 제조업 생산·수출의 3분의 2, 고용의 절반을 차지하는 산업단지를 AI 산업단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M.AX 클러스터”를 속도감 있게 조성해나갈 계획

[핵심 과제]

제조AI는 제조 현장의 데이터·지식(Domain knowledge)과 AI 알고리즘을 동시에 이해해야 하는 어려운 영역인 만큼 ▲기초 → ▲고도화 → ▲확산 → ▲생태계 조성 등 단계적·체계적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할 계획

▲제조AI 기초 단계에서는 제조데이터 수집, AI 모델·에이전트 개발 등 제조AX 확산 기반을 마련. 우수한 AI 모델·에이전트 개발에 필수적인 양질의 제조데이터를 수집하며, 은퇴를 앞둔 대한민국 제조명장(숙련 노동자)이 가지고 있는 “제조 암묵지(제조노하우)”를 데이터로 변환·수집하여 AI로 전환시키기 위한 대규모 사업도 추진

▲제조AI 고도화 단계에서는 대형 제조AI 에이전트, 휴머노이드, 제조피지컬AI 등 제조AI 역량을 하나로 응축한 “풀스택 AI팩토리” 기술을 개발. 공장·제품 설계→검증·시생산→공장 운영(생산)→유통·물류 등 제조업 생산·경영활동 전반을 제어·관리하는 “대형 AI에이전트”를 개발하고, “제조 특화 휴머노이드” 상용화를 위한 핵심부품 개발, 실증 사업 등을 확대

▲제조AI 확산 단계에서는 지역 기업의 AI도입을 지원할 지역산단별 “M.AX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이를 위한 산단별 실증 테스트베드, 엣지컴퓨팅센터 등 공용 인프라를 구축. 또한, 상생형 AI 스마트공장 사업 등을 통해 대기업 협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에 제조AX 방법론을 제시하고, AI팩토리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해외 공장 구축시, 진출 국가, 기업 특성을 고려한 지원 정책을 마련

▲제조AI 생태계 조성 단계에서는 제조AX 민간투자 확대, 관련 전문기업 육성, 인력양성 등을 추진. 먼저, 민간 투자를 촉진할 펀드·보증 등을 적극 활용하며,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투자와도 적극 연계. 그리고 제조AI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제조AX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제조AI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석·박사 과정과 제조현장의 AI 확산의 주역이 될 현장재직자 교육 프로그램을 병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뢰 기반의 인공지능 혁신을 촉진하는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7~’29)」 발표

- 위험비례 규율, 예방중심 보호, 범정부 협력, 원스톱 국민 권리구제 체계 확립 등 인공지능 시대 정책적 요구에 적극 대응하는 개인정보 정책 청사진 제시

2026-07-03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신뢰 기반의 인공지능(AI) 혁신을 촉진하는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7-2029)」(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음

이번 기본계획은 개인정보위가 법에 따라 3년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함께 수립하는 계획으로, 인공지능 대전환에 따른 데이터 활용 수요 증대와 반복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당면환경에 대응하여 향후 3년간 추진할 개인정보 정책의 청사진을 마련한 것임

기본계획은 “신뢰받는 개인정보 환경, 안심하고 누리는 인공지능(AI) 사회”를 비전으로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 개인정보 보호체계 혁신, ▲사전예방 중심 보호체계 확립, ▲전략적 개인정보 정책 고도화, ▲국민 권익 증진 및 신뢰문화 정착이라는 4대 전략과 12대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마련되었음

(1) 인공지능 시대 신뢰기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체계 혁신

인공지능 환경을 유연하게 반영하는 규율체계로의 전환을 추진. 인공지능 환경 이전에 설계된 일률적 규제에 법령 준수가 어렵고 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위험에 비례한 보호를 규율하는 원칙 중심 보호체계로 전환

인공지능 전환(AX) 과정에 수반되는 개인정보 처리의 불확실성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혁신지원 종합 창구로서 ‘인공지능 전환(AX) 안심지원센터’도 운영할 계획. 나아가,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에 발맞춰 전국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데이터 혁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 거점별 데이터(가명·익명) 연계·활용 허브를 구축·확대

인공지능 데이터 신뢰 확보를 위한 프라이버시 리스크 대응을 강화. 자율형 인공지능(에이전틱 AI)에 의한 처리 등 의사결정의 책임구조 검토, 실물 인공지능(피지컬 AI)의 상시적 정보 수집 확대에 대응하는 권리보장, 위험평가 등 최신 기술에 대한 규율체계와 보호 기준도 수립

(2) 개인정보 보호체계 사전예방 중심으로 정착

유출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온전한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전예방 중심의 보호체계를 확립하고 현장 정착 및 내재화를 지원

고위험군 집중점검, 부처 2합동점검 등 상시적 점검 체계를 고도화하여 사고 발생 전 취약점이나 보호 조치를 미리 점검하여 개선하는 데 집중. 이와 함께, 취약점 점검 등 범정부적 상시적 방어체계를 확립하고 인공지능 보안점검 등 보안점검 제도화를 추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ISMS-P) 인증 및 각종 평가체계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여 기준과 절차를 개선하여 실효성 제고. 특히,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량 보유·처리하는 공공분야는 안전조치 기준 강화, 상시적 점검체계 확대, 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우선 추진하여 보호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

아울러, 기존 유출 시 조사·제재 중심으로 대응했으나, 상시적 유출 위협 환경을 고려하여 ‘회복력(resilience) 지원’ 중심으로 대응 인프라를 재정비. 중소기업 유출 발생 시 복구 기술지원 중심으로 대응하고, 사고 이전에도 중소·영세기업에 맞춤형 컨설팅, 보호·보안 지원 사업을 제공. 이를 통해 보호·보안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산업계 전반의 보호수준을 상향평준화 할 수 있는 기반을 수립

(3) 범정부 보호 협력체계 및 안전한 국경간 데이터 이전 체계 고도화

전 산업 분야에서 개인정보 활용 확대를 고려하여, 개인정보 보호가 범정부 차원의 과제로 이행되도록 범부처 협력체계를 확립. 통신, 교육, 고용 등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분야는 개인정보위와 소관부처가 공동 점검·관리하는 체계를 수립하고, 개인정보 위협 요소에 대한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여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추진

아울러, 디지털 환경의 규제 체계 간 정합성도 확보한다. 개인정보 중복규제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체계를 정비하고, 금융·공정거래 등 관련 규제기관 간 협력을 강화. 인공지능 및 데이터 정책 소관 기관과도 긴밀하게 협력하여 디지털 분야의 법령 간 적용 관계를 명확화

생성형 인공지능, 클라우드 환경 등 국외이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 이전 네트워크도 확대. 이미 수립된 한-EU 상호 동등성 인정 체계에 이어, 영국, 일본, 미국 등 법체계 유사성, 교역규모 등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으로 데이터 상호 이전 네트워크를 확대. 이와 함께, 보호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국가로의 데이터 관리 대응력 강화로 안보위험을 최소화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시행일자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2026-10-01 시행 예정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각각 1명 증원하는 내용 등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변경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 경제분석 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 경제분석국 및 4개 과·담당관을 신설하고 인력 135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4명, 4급 또는 5급 5명, 5급 58명, 6급 44명, 7급 22명, 9급 1명)을 증원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기관에 불공정행위 사건과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1개 과를 신설하고 인력 70명(5급 1명, 6급 26명, 7급 17명, 8급 13명, 9급 13명)을 증원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사건의 중점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관리관 밑에 한시조직으로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하고 인력 33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3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9명, 6급 13명, 7급 5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국방부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07-01 시행
-----	-----------------	---------------

소요결정 단계에서 선행연구를 수행한 후, 소요가 결정된 경우에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의 공유재산 사용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여 원활한 사업 수행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242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선행연구가 완료된 후에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을 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요가 결정된 후에 그 추진방법을 결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받거나 대부 또는 양여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유재산을 소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을 증대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한 방위산업물자의 수리부속품을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동일한 최종사용자에게 수출하는 경우에만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년 이내에 동일한 최종사용자에게 그 수리부속품을 수출하는 경우까지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07-01 시행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는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시허가 시 조건을 붙일 때에는 조건 부가로 인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 개정(법률 제21285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외국어 의료광고가 허용되는 특화사업자의 기준을 정하고, 임시허가 관리를 위한 관리기준을 최소한으로 붙이게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성과가 부진한 지역특화발전특구 관리를 위하여 그 지정 해제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07-01 시행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의 의무 투자 대상에 투자 유치 이력이 없고 창업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을 추가하고, 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287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의 의무 투자 대상인 5년간 국내외 투자유치 이력이 없는 창업기업의 범위를 정하고, 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 연장 시 탈퇴 및 투자금 회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산업통상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06-23 시행

제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에서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종합계획 수립·시행,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회사 설립·운영,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선도사업 선정 등 종전의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제도 등에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1250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제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산업인공지능의 활용범위와 산업인공지능의 기술적 수준 및 활용 수준 등의 진단 기준을 정하며, ‘인공지능 활용’을 관련 규정에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07-01 시행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업주에게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는 이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1375호, 2026. 2. 19.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근로계약서 등 근로조건에 관한 자료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자료 등으로 정하는 한편,

업무상 질병의 산재보험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소음성 난청의 진찰로 한정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병원·의원급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특진의료기관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2026-06-30 시행

공동주택 건설 시 소음 규제 완화 기준 중 도시지역 내 주택단지의 면적상한을 폐지하고, 위해시설 등으로부터 공동주택 등을 배치하는 기준을 합리화하며, 작은도서관 설치 예외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06-30 시행

회사는 자기주식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할 수 없도록 하고,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해당 신탁을 설정한 상장회사의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의 발행 및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신탁을 인수한 신탁업자의 자기주식 취득·처분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된 「상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한편,

개정된 「상법」에서 모든 회사는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하려는 경우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도록 한 점을 고려하여 자기주식보고서 작성 대상 주권상장법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 부개정령안	2026.07.02. ~2026.08.1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중소기업제품’ 정의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생산하는 물품의 범위’를 마련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선 권고한 제9조제2항의 제4호 요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행령 개정

① 중소기업제품 생산범위 규정 마련 (안 제2조)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중소기업제품의 범위)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중소기업제품의 범위) 및 제3항(세부사항 고시 위임)을 각각 신설하여, 자체생산, 국내 OEM을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의 범위’로 인정

② 조합의 중기간 경쟁 입찰 참가자격 요건 완화 (안 제9조)

- 제9조제2항제4호 중 “10시간”을 “6시간”으로 하여, 요건 완화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전화: 044-204-7548\)](#)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7.01. ~2026.08.10.
-------	--------------------	-----------------------------

미신고 숙박업 영업에 대한 통신판매 중개 금지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이 미신고 숙박업자로부터 의뢰받아 숙박업 중개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098호, 2025. 11. 11. 공포, 2026. 11. 12. 시행)됨에 따라, 미신고 숙박업자로부터 숙박업 중개를 의뢰받아 통신판매 중개를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생활보건팀 \(전화: 044-202-2857, 팩스: 044-202-3937\)](#)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06.29. ~2026.08.10.
-------	------------------------	-----------------------------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시 확보해야하는 주차 기준을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요건 충족시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생활주택의 확대를 유도하고 민간의 비아파트 공급 부진을 보완, 해소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현재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조례를 통해 주차기준을 20~50%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던 것을 강화 기준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고, 완화할 수 있는 주차대수 확보 의무를 50~70%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아울러, 도시형생활주택 150세대 이상 건설시 주민공동시설 설치 의무가 있던 것을 도시형생활주택으로부터 300미터 거리 이내에 주민공동시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공시설이 위치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 (전화: 044-201-3370, 팩스: 044-201-5684)

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6.29.
~2026.08.10.

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에 적용되는 층수 제한을 완화하여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생활주택의 확대를 유도하고 민간의 비아파트 공급 부진을 보완, 해소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개선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 가능한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6층까지 건축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 (전화: 044-201-3370, 팩스: 044-201-5684)

국토교통부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6.30.
~2026.08.14.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춰 항공운송사업자 신규 면허 발급 시 자본금 요건을 상향하여 안전투자 및 소비자 보호 여력을 강화하고, 부실한 항공운송사업자가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사업개선 명령 후 2분의 1 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 규정이 자본잠식이 2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항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6565호, 2019. 8. 27. 공포, 2020. 2. 28. 시행)됨에 따라, 해당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 요건도 이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임

- ① 신규 항공운송사업자의 재무건전성과 안전투자 여력 확보를 위하여 면허기준 자본금을 상향 조정함 (안 별표1)
- ②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의 재무건정성 확보를 위하여 면허취소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본잠식 지속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도록 「항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6565호, 2019. 8. 27. 공포, 2020. 2. 28. 시행)됨에 따라, 해당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도 동일하게 정비함 (안 별표3)
- ③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함 (안 별표11)

※ 문의처 :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http://www.mot.go.kr) (전화: 044-201-42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6.30.
~2026.08.10.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전송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제3자전송요구권은 국민 체감도, 민간의 데이터 수요, 국가적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전송 분야를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중으로, 보건의료·통신·에너지 분야에서만 우선 시행 중이던 제3자전송을 고용·교육 분야까지 확대하고자 하며,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본인전송요구권 확대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26.2월)에 따른 본인전송 범위 및 전송자의 의무를 조정하는 한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지정요건·전문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감독범위를 조정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도의 원활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① 정보주체가 지정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전송하여야하는 개인정보 처리자 및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 (영 제42조의2 및 제42조의4 개정)
 - 국민 체감도, 민간 데이터 수요, 국가적 파급력을 고려하여 제3자대상정보전송자 및 전송요구 대상 정보를 교육·고용 분야로 확대
- ② 본인전송요구권 전 분야 확대 시행령 개정 후속조치로, 본인전송 범위 및 전송자 의무 조정 (영 제42조의4, 제42조의6 및 제42조의16 개정)
 - 정보주체가 전송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 조정, 정보전송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항,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 등재 근거 마련
- ③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범위, 지정요건, 보호위원회의 감독 범위 조정 (영 제42조의9 및 42조의15 개정)
 - 공공기관의 중계전문기관 및 일반·특수전문기관 겸업 금지제한 적용 제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요건 강화,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에 대한 보호위원회의 현장점검 근거 마련

④ 개인정보 보호법의 원활한 운영 (영 제13조 및 제46조 개정)

-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자료제출 요구할 수 있는 범위 조정, 중계전문기관이 개인정보처리자의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 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문의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http://www.kpcc.go.kr) (전화: 02-2100-3172, 팩스: 02-2100-3199)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0인)

2026-06-30 발의

현행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 사실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판결함(변론주의). 따라서 당사자는 유리한 증거를 직접 수집·제출하여야 하나 현행법에서는 당사자가 증거를 확보할 수단이 부족하고, 법원의 인적·물적 여건의 한계, 소송당사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하여 실제적 진실의 발견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로 인하여 재판의 효율성, 공정성, 재판 결과에 대한 양 당사자의 신뢰도가 높지 않음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 방법으로서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라 감정 또는 검증을 신청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법원의 인적·물적 여건의 한계로 인하여 모든 사건에서 당사자가 원하는 수준으로 충분한 시간을 들여 현장 확인·자료 분석을 수행하기 어렵고, 상대방이 관리하는 자료·시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증거 확보가 곤란한 경우가 많음

이에 법원이 전문성을 갖춘 제3자(지정전문가)를 지정하여 현장 출입, 자료 열람·복사, 장치 작동·계측·실험 등 필요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게 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쟁점에 관한 증거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조사 범위와 절차에 대한 법원의 통제를 강화하고, 의사교환 등의 제외 및 열람 제한 등 비밀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상대방의 정당한 권익 침해방지와 동시에, 정당한 사유 없는 조사 거부·방해·기피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절차상 불이익을 부과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1인)

2026-06-30 발의

최근 건설공사의 수행이 해외 현장으로 확대되고 국내 원사업자가 국내 수급사업자에게 국외 공사를 위탁하거나, 국내 원사업자의 계열회사인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국내 수급사업자 등과 건설위탁을 체결·이행하는 거래 형태가 증가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건설위탁에 대한 적용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동일한 경제적 실질을 가지는 하도급 거래임에도 거래 장소·계약 형식 또는 당사자 구성을 이유로 법 적용의 공백이 발생하거나, 기업집단이 계열회사 구조를 활용하여 하도급법상 규율을 잠탈할 우려가 있음

특히, 원사업자가 국제중재를 전속적 관할로 하는 계약 조항을 일방적으로 삽입함으로써 국내 수급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법적 보호나 국내 법원에의 접근을 실질적으로 차단당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국제중재는 비용과 시간 면에서 중소 수급사업자에게 현저한 부담을 주는 절차로서, 이를 전속적 관할로 강제하는 특약은 수급사업자의 법적 구제 가능성을 봉쇄하는 불공정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큼

이에 국외에서 이루어진 건설위탁에 대하여도 이 법을 명시적으로 적용하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계열 외국법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도록 하며, 국제중재를 전속적 관할로 하는 특약을 부당 특약으로 규정하고, 국외 건설위탁에 관한 조사개시 대상 기간을 거래 종료일부터 7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수급사업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건설하도급 거래의 공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2인)

2026-06-30 발의

현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 국어와 영어 등 복수의 언어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모호하거나 반대되는 해석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어떤 언어를 우선하여 해석하고 적용할지에 대한 규정이 없음

그런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계약할 때 외국어로 작성된 계약서를 그대로 국어로 번역하여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수급사업자가 외국어 계약서의 독소조항이나 법적 뉘앙스를 완벽히 파악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공기 연장, 추가 비용·위약금 등의 분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는 외국어 조항의 자구를 우선 적용하며 책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위탁 계약 혹은 추가·변경위탁 계약시 서면을 국어와 외국어로 작성하였을 때 해석이 모호하거나 상충되는 해석이 가능한 경우 국어로 작성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안 제3조제2항)

정무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의원 등 10인)

2026-07-01 발의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법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평판 저하를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상호명만 변경하거나 새로운 상호로 개업하여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피해가 지속되므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이력까지 공개하여 소비자가 사전에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사업자의 법 위반 사실과 법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 받은 이력에 관한 사항, 사업자등록 및 변경 이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고자 함 (안 제28조)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1인)

2026-07-01 발의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소속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자산형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및 노사협력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임. 그러나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 등이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배정하도록 하고 있어 근로자의 자산형성 기회를 확대하고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 우선배정 비율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유하는 주식수 기준도 신규 발행 주식과 이미 발행된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으로 조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자산형성 기회를 확대하고 우리사주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안 제165조의7제1항 및 제2항)

정무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3인)

2026-07-02 발의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미리 제공하고 일정 기간 숙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전 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일부 가맹본부가 계약 체결 직전 또는 계약 당일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여 가맹희망자가 그 내용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이나 수익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산정근거, 산정과정, 위험요인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형식적으로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가맹희망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하고 정보 비대칭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 수령 및 가맹계약 체결을 제한하며,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산정서 등 예상수익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산출근거 및 매출변동요인을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가맹희망자에게 숙고의 기회를 보장하고, 상세한 정보 제공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안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4항·제5항 등)

정무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5인)

2026-07-03 발의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가맹계약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하기 이전에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상가 임대차계약 또는 인테리어 계약, 설비 구매계약 등을 미리 체결하도록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 경우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한 가맹희망자는 위약금 부담이나 권리금 손실을 우려하여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거나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지 못한 채 사실상 가맹계약의 체결을 강요받는 상황에 놓이고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속고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가맹사업 영위에 필요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정착물 또는 설비의 구매계약 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7조제3항제3호 신설 등)

정무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23인)

2026-07-03 발의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단체소송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소비자단체소송으로는 개별 소비자에 대한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권리 구제 수단으로 활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음. 최근 대규모 제품 결함이나 온라인 서비스의 개인정보 유출 등 기업의 이윤 추구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동시다발적인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소비자의 집단소송 제도 미비로 인해 소비자가 직접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기를 포기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소비자기본법」에 소비자집단소송 제도를 신설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손해배상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36까지 신설 등)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의원 등 13인)

2026-06-29 발의

최근 일부 기업들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하여 출산한 직원 등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이러한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기업을 위한 세액공제 규정이 없음. 그러나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출산장려금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 (안 제104조의37 신설 등)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0인)

2026-06-30 발의

현행법은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사업 지정 단계에서 타당성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상사업 지정 이후 총사업비의 증가나 사업계획의 중대한 변경 등으로 사업의 경제성 및 재정적 타당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이를 재검증하기 위한 타당성 재조사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한편, 민간투자사업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물가 상승, 설계 변경, 사업 규모 확대 등으로 총사업비가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을 재점검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나, 국가 균형 발전, 도시 기능 유지 또는 주택 공급 촉진 등 공익상 필요에 따라 신속한 사업 추진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상사업의 총사업비 증가 또는 사업계획의 중대한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8조의3 신설)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이준석의원·황정아의원 등 11인)

2026-07-02 발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소득세 납부특례 및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반면, 기업의 장기성과와 임직원의 보상을 연계하는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세특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최근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는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장기성과 연계형 보상수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성과조건부주식을 양도받은 임직원은 현금 유입이 없는 상태에서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기업이 성과조건부주식을 보상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의 임직원이 성과조건부주식을 양도받는 경우 그 성과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인재 확보와 장기성과 중심의 보상체계 구축을 지원하려는 것임 (안 제16조의6 신설)

국방위원회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2인)

2026-06-30 발의

현행법은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무기체계에 신속하게 적용하기 위한 신속소요 제도’ 및 ‘소요가 결정되지 않은 무기체계 등에 대한 시범사업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경우에도, 소요결정부터 시험평가 및 전력화에 이르는 전 과정(소요, 계획, 타당성, 사업, 시험평가, 전력화)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그 중 일부 과정을 제외하거나 병합하는 형태로 사업추진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로써, 그 단축효과 및 선정대상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특히 최근 전쟁 사례에서 확인된 수명주기가 짧고 전장에서 대량 소모가 예상되는 무기체계 및 기술주기가 짧은 첨단 무기체계의 경우, 기존의 중후장대한 사업관리 절차를 일부 제외하는 형태로는 기술주기 및 발전속도, 소모성을 반영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수명주기가 짧고 전시 대량소모가 예상되는 무기체계 및 기술주기가 짧은 첨단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와 국방 획득 체계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요결정 이전에 방위산업체 및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등의 상시 신청을 받아 신청자가 제안한 성능 등에 대한 시험평가를 우선 진행하고, 각 군의 소요가 발생하는 즉시 전력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3의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을 신설하고자 함 [제17조(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 방법 등) 각 항 개정 및 제19조의 2(기술주기가 짧은 대량 소모형 무기체계 사전인증품 즉시 구매) 및 각 항 신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희의원 등 10인)

2026-06-30 발의

현행법은 침해사고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 또는 소프트웨어의 보안에 관한 취약점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대규모 보안 침해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보안 취약점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조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취약점 신고 포상금의 하한액은 5만 원에 불과하여, 전문적 지식과 시간, 노력이 필요한 취약점 신고를 활성화하기에는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범위를 2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신고자의 참여 동기를 실질적으로 높이고 보안 취약점의 조기 발견을 촉진함으로써 침해사고 예방과 피해 확산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47조의6제1항)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

2026-07-01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최근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하였음. 그러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치부를 폭로하여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가해자가 해당 정보로 수익을 계속 창출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정보의 게재자에 대하여 광고 수익화 제한 등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범한 자를 필요적 몰수·추징 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사이버 렉카에 대한 실효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44조의12제9항 신설, 제70조제4항 및 제76조제2항제5호의3 신설 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

2026-07-01 발의

현행법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외 가입자식별모듈을 판매할 때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표시·고지하도록 하는 의무는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국외 가입자식별모듈이 온라인 판매업소 등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거래되고 있음에도 이용자는 현지의 접속망에 관한 정보만 안내받고 있어 송수신되는 데이터가 어느 통신사업자가 운용하는 전기통신설비를 경유하는지 등에 관한 정보를 알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외 가입자식별모듈을 판매하는 자에게 해당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및 송수신되는 데이터가 경유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운용하는 자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그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며 그 위반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21호의2, 제32조의23, 제50조, 제51조의3 및 제99조)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0인)

2026-07-03 발의

현행법은 음란물, 명예훼손 정보, 사행행위 정보 등 불법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 거부·정지·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급증하면서 상표권자의 권리 침해와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조상품 판매 정보는 현행법상 불법정보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규율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명시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건전한 온라인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안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5 신설 등)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7인)

2026-06-29 발의

현행법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행위를 하였을 경우 5배 이내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법원의 판결에서는 평균적으로 배상액이 그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1.5배 이하이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인 법 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침해행위로 인하여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도록 함 (안 제115조)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5인)

2026-06-29 발의

현행법은 창업기업의 초기 판로를 확대하고 공공구매 분야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창업기업제품에 대해 일정 비율의 구매목표를 정하고 목표 이상을 구매하도록 하는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벤처기업제품”이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술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벤처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및 초기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벤처기업제품을 포함한 ‘창업·혁신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로 개편하여 벤처기업제품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안 제38조 개정)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2인)

2026-06-30 발의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제조·공사·용역 등을 위탁할 때 약정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약정서의 언어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어 예컨대 해외 플랜트 건설공사를 위탁할 때 위탁기업인 대기업이 영어 등 외국어로 작성된 약정서만을 발급하거나, 국어번역문을 제공하더라도 차후 거래조건과 관련한 분쟁 시에 외국어 약정서가 우선함을 주장하여 수탁기업인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수탁·위탁 거래 약정서에 관해서는 국어를 기준으로 하도록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작성·발급하는 약정서에 국어를 사용하도록 하되 거래당사자가 요구하는 경우 외국어로도 작성·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어 약정서와 외국어 약정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에 국어 약정서의 내용이 우선함을 법률에 명시하여 국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1조)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2인)

2026-07-01 발의

현행법은 재난의 발생 또는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휴·폐업 또는 조업중단 중소기업의 증가 또는 증가 우려에 대응하여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분쟁, 상대국의 무역제한조치 등 대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원자재가격·에너지가격·운임 등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매출 감소가 가시화되기 전에 유동성 위기가 나타나는 등 피해가 업종 간 경계를 넘어 빠른 속도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위험방지 및 위기대응 차원에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급망 위험 및 에너지 가격 급등을 포함한 대외적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상황에서 긴급경영안정지원 계획에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 및 신속 지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61조)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0인)

2026-07-02 발의

현재 자동차산업은 내연기관차에서 미래차로의 급격한 패러다임 전환을 맞이하고 있음. 이러한 전환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특히 자동차부품산업 노동자들의 고용 구조와 노동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동반함. 그러나 현행법상 미래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논의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전략회의 구성에서 산업 생태계의 핵심 주체인 노동계 대표가 배제되어 있음. 이는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관리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어긋나는 것임

이에 국가 재원의 공정한 배분 책무를 명시하고 기본계획의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미래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고용 유지 및 전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전략회의 위원에 노동계 대표 참여를 명문화하고 지역별 노사정 협의체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의로운 산업 전환을 실현하고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는 미래차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회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2026-06-30 발의

디지털 기술의 획기적 발전에 따라 사회 각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도 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Digital Healthcare) 서비스 기반을 조성하여 관련 산업을 적극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021년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 의료인의 71.8%가 디지털 헬스케어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등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진흥 및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보건의료정보의 원활한 활용 촉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보건의료계는 물론,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임. 미국·영국·일본·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도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기술개발부터 산업화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지원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우리나라도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 차원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디지털 헬스케어 운영체계와 기반을 조성함과 동시에,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지원하고자 함

보건복지위원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2026-06-30 발의

해외 직접구매가 일반화되면서 위해한 직접구매·해외식품 등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직접구매·해외식품 등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하여 재유통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위해한 해외식품 등에 대한 정보제공, 통신판매중개자 등의 자율적 관리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어, 위해한 직접구매·해외식품 등에 대한 통신판매중개 금지 등의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위해한 직접구매·해외식품 등에 대한 통신판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5조의7 신설 등)

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1인)

2026-07-01 발의

현행법령은 의료기관이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또는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등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려면 200병상 이상을 갖춘 의료기관(시 지역 기준)에 한하여 허용하고, 2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다른 의료기관과의 병상 공동활용을 전제로 병상 수의 합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동활용 병상의 충족률은 전국 평균 46.3%, 서울은 25.1%에 불과하여 제도 운영의 전제가 되는 병상 확보 자체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일 뿐만 아니라 병상 수가 부족한 중소 의료기관들은 장비 설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병상 1개당 약 300만 원을 지급하고 병상을 확보하는 이른바 ‘병상 거래’에 의존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음성적 거래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는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음

이에 따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기준을 의료기관의 병상 수가 아닌 실제 의료 수요와 진료 기능을 중심으로 재설계 하고, 장비 공급을 시장 원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획일적인 양적 규제를 지양하고, 장비의 성능, 운영의 적정성, 의료인력 확보 등 질적 기준 중심의 관리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특히, **장비의 사용 연한에 따른 차등수가제 도입을 통해 노후 장비의 자연스러운 퇴출을 유도하고, 신규 장비 도입을 촉진하는 한편, 영상의학과 전문의 등 필수 의료인력의 적정 배치를 의무화하여** 장비 운영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비현실적이고 왜곡된 현행 규제를 정상화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국민 건강권 보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안 제38조)**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2인)

2026-06-29 발의

태양광, 풍력 발전설비 및 재생에너지와 연계되는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수명 만료가 가까워짐에 따라 향후 수만 톤 규모의 특수 폐기물이 단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특히 산지나 농가 등에 분산된 태양광 폐패널, 복합재로 구성된 풍력 블레이드, 재생에너지 설비용 에너지저장장치 등은 환경오염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순환이용 대상에 태양광 패널, 풍력 블레이드 등 재생에너지설비 또는 대용량의 재생에너지를 저장·제어하는 에너지저장장치의 핵심 부품으로서 사용된 것을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을 포함하고, 이를 정부의 재정적·기술적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설비, 에너지저장장치 폐기물의 순환이용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3호다목 및 제41조제1항제4호의2 신설)**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기후테크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박정의원 등 36인)

2026-06-29 발의

기후테크는 기후적응, 기후위험 관리, 온실가스 감축 및 제거 등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 서비스, 제품 등의 집합으로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사회 전 영역의 구조적 변화를 촉진하는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체계에선 기후테크 산업화와 이의 확산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특별법을 제정해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미래 성장 핵심 동력으로 전환하고자 함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21인)

2026-06-30 발의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노사 간 자율적인 교섭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사용자 개념의 불명확성과 노동쟁의 대상 범위의 확장, 부당노동행위 규율의 비대칭성 등으로 인해 산업현장에서의 갈등과 법적 불확실성이 끊이지 않고 있음

특히 ‘노란봉투법’ 시행 후 각급 노동위원회는 법률이 원천에 부여한 산업안전 관련 의무마저 사용자성의 인정 근거로 확대해석하고, 거대 노조는 개인당 수억 원의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을 강행하는 등 현행 법이 노사질서의 왜곡과 현장의 혼란을 방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실정임

이에 사용자 개념을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권한과 책임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에서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제외하며, 사업장 점거 금지와 대체근로 허용 및 노동조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금지 등을 도입해 노사관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산업현장의 갈등을 완화하는 한편, 공정하고 균형 잡힌 노동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안 제2조제2호·제5호, 제42조제1항 등)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2026-07-01 발의

플랫폼경제의 확산, 디지털 기술 발전 및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따라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영역에 위치한 노무제공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26년 고용노동부 연구 보고서의 추산에 따르면, 특수고용노동자 약 126만 명, 플랫폼종사자 약 80만 명, 프리랜서 약 66만 명 등 비임금 노무제공자의 실질 인원은 약 210만 명 규모로 추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8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노무제공 직종이 등장할 때마다 대통령령의 개정이 필요하고, 유사한 방식으로 노무를 제공함에도 직종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등 예측가능성과 대응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열거주의 방식에서 노무제공계약의 실질에 기초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노동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노무제공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안 제91조의15제1호)**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9인)

2026-07-01 발의

현행법은 사업주의 도산 또는 임금 지급능력 상실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체불로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생계비 용자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문화예술 분야 등 비전형 노동이 확대되면서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들이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수 체불이 발생할 경우 생계에 중대한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음

이에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등”의 개념에 포함하고, 이직하였거나 계속 종사 중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도 미지급 보수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및 생계비 용자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보수 지급책임 사업주 판단 기준과 체불 확인 절차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호와 생활안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2인)

2026-07-01 발의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소속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에 기여해 온 대표적인 근로복지제도임. 그러나 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주주권 행사에 대한 보호장치가 충분하지 않고, 우리사주제도를 통한 근로자 자산형성 및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육성정책 역시 부족한 실정임

이에 **우리사주제도의 목적에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가하고, 우리사주조합 임원 선출에 대한 조합원 참여를 강화하며 우리사주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의무화하는 등 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 운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2026-06-30 발의

현행법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용도지역 변경으로 용적률 상향 시, 추가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음. 아울러,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을 허용하고 있음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할 때 전체 면적이 아닌 ‘초과용적률’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소규모주택정비 제도하에서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받기 위한 임대주택의 건립 비율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세대수에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까지 포함되어 있어, 사업성을 저하시킨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이에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을 위한 임대주택을 산정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전체 건축물 연면적 또는 세대수에**서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하여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제외하도록 산정 방식을 개선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제고함으로써, 원활한 주택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49조제1항 후단 신설)**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정무위	전체회의	7/6(월) 10:00	- 간사 선임의 건
재경위	전체회의	7/7(화) 10:00	- 간사 선임의 건, 업무보고(제정경제부·국세청·조달청 등)
		7/9(목) 10:00	- 업무보고(기획예산처·한국은행 등)
과방위	전체회의	7/6(월) 10:00	- 간사 선임의 건
국방위	전체회의	7/6(월) 14:00	- 간사 선임의 건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 미나	7/6(월) 09:30	AWC: AI War 2026: 실전이 된 전장, 대한민국 국방AI 골든타임	유용원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7/6(월) 14:00	청정수소 시장의 선순환, 공급과 수요를 어떻게 함께 키울 것인가?	정태호·이종배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7/7(화) 10:00	AI 시대 올바른 기후·에너지 정책	김용태·김소희 의원실 등	의원회관 6간담회의실
	7/7(화) 10:00	국회관광산업포럼 제6차 관광정책세미나	민병덕·김석기 의원실 등	의원회관 3간담회의실
	7/7(화) 14:30	(희귀·난치질환 환자 치료기회 확대 및 필수약품 공급망 확보를 위한) 대마 성분 의약품 도입 방안 정책 토론회	김형동·서미화 의원실 등	의원회관 6간담회의실
	7/8(수) 14:00	제9회 해양안보 세미나: 핵추진 연료, 유무인 탑재 항모건조와 해양 무인기·무인함정·잠수정 개발현황	유용원 의원실 등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7/9(목) 14:00	당뇨병 예방관리 정책토론회	김윤·서미화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7/10(금) 14:00	K-스타트업을 세계 무대로!	김건 의원실	의원회관 9간담회의실
	7/10(금) 15:00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2026년 상반기 활동보고 & 역량강화 워크숍	오세희 의원실 등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자료집 등	7/7(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026-13호(통권 제301호)	국회도서관	
	7/8(수)	「금주의 서평」 제2026-26호(통권 제785호)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38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6/29(월)	「최신외국정책정보」 제2026-8호(통권 제32호)	국회도서관	
	6/30(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026-12호(통권 제300호)		
	7/1(수)	「금주의 서평」 제2026-25호(통권 제784호)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6/29(월)	공정거래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6/29(월)	방송통신(TMT)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출범
6/30(화)	노동	월간 노동 뉴스레터
6/30(화)	건설/부동산	월간 건설부동산 뉴스레터
6/30(화)	건설/부동산	세종 건설클레임센터 Monthly Insight 6월호
7/1(수)	금융	일정실업 사례로 본 시가총액 미달 상장폐지 절차와 상장사의 선제적 대응 방안
7/1(수)	조세	이혼 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나눌 것인가? - 현물분할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 실무상 시사점
7/1(수)	노동	ILO, ‘플랫폼 경제에서의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 채택
7/1(수)	공정거래	‘소비자 3법’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 반복 위반 제재 강화 및 임의적 감경 축소
7/1(수)	건설/부동산	책임준공 관리형토지신탁 사업에서 보증기관의 항변을 모두 배척하고 계약이행보증금 전액 지급을 인정받은 사례
7/2(목)	조세	세종 미래상속 Insight 2호
7/2(목)	에너지·자원	해외 투자개발사업 Issue Brief - ‘ADB 재원투입 해외 인프라 사업’에 대한 조달 제도 동향 : MPC 도입
7/3(금)	금융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6. 6. 17. - 2026. 6. 30.)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남형기 | 고문

프로필보기



윤형중 | 고문

프로필보기



김건훈 | 수석전문위원

프로필보기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이승상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